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 신·구조문 대비표

[2017.4.1., 시

행]

현행	개정안
<p>제10조(카드의 이용한도)</p> <p>② 카드사는 카드의 유효기한 이내 및 유효기한 경과 후 카드를 갱신하여 발급할 경우 회원의 월평균 결제능력,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을 바탕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의 이용한도 적정성을 평가한 후 이용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한도를 조정하여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u>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전자우편(E-MAIL)</u> 등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p>	<p>제10조(카드의 이용한도)</p> <p>② ----- ----- ----- ----- ----- ----- ----- ----- ----- ----- ----- <u>전자우편(E-MAIL),</u> <u>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u> ----- -----.</p>

현행	개정안
<p>③ 카드사는 <u>이용한도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증액하고 회원에게 이용한도의 증액을 신청하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됩니다.</u> 다만, 종전 이용한도 또는 회원이 과거 신청한 이용한도까지 증액하는 경우에는 <u>서면, 전화,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전자우편</u> 등의 방법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한 후 증액할 수 있습니다.</p>	<p>③ ----- <u>이용한도 증액 시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증액하고 회원에게 이용한도의 증액을 신청하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됩니다(회원이 사전에 이용한도 증액이 가능할 경우 이를 안내하여 줄 것을 카드사에 신청한 경우는 제외).</u> ----- ----- ----- ----- <u>전화,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u> ----- ----- ----- -----.</p>
<p>④ 제2항에 따라 이용한도를 감액하는 경우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u>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전자우편(E-MAIL)</u> 등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p>	<p>④ ----- ----- ----- ----- <u>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u> ----- ----- -----.</p>
제15조(포인트 및 기타 서비스)	제15조(포인트 및 기타 서비스)

현행	개정안
<p>① 카드사는 카드사가 정한 가맹점에서 회원이 카드를 사용할 경우 결제 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가치를 포인트 등으로 적립하여 드립니다. 또한, 회원이 카드를 해지한 경우라도 잔여포인트는 포인트 유효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하나, 회원이 개인정보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카드사는 회원이 탈회(회원의 유효한 카드가 없어 회원자격이 상실된 상태)나 개인정보삭제를 요청한 경우 탈회 또는 삭제 전 잔여포인트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기타 금융 관계법 위반으로 인한 탈회나 개인정보삭제 요청인 경우, 해당 카드사는 잔여포인트 가치에 상응하는 별도의 보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p>	<p>① (현행 제1항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② 카드사는 포인트제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홈페이지.부속명세서 등에 명시하고 카드를 발급할 경우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포인트의 적립.사용.소멸 등 포인트 제도에 관한 내용 2. 포인트적립률, 사용대상, 사용가능 최소적립기준, 유효기한, 연간 적립한도 등에 관한 내용 3. 포인트 적립 제한(연체, 적립한도초과 등) 및 적립된 포인트 사용 제한(연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 	<p>② (현행 제2항과 같음)</p>
<p><신 설></p>	<p>③ <u>제2항의 경우 카드사는 회원의 포인트 사용비율을 제한하지 않습니다.</u></p>

현행	개정안
<p>③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단,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가서비스와 관련된 제휴업체 또는 카드사의 휴업·도산·경영위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2. 카드사가 부가서비스 유지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 변경을 통보함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다만,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3. 카드의 신규 출시 이후 출시 당시의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지 않고 3년 이상 경과하였고, 현재의 부가서비스를 유지할 경우 해당 상품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의 변경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④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 모집인,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카드 발급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카드가 출시된 시기 2. 제3항에 따라 부가서비스가 변경될 수 있는 각각의 경우 	<p>⑤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 제1호와 같음) 2. 제4항----- -----
<p>⑤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카드사의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전자우편(E-MAIL)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는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 드립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항 제1호, 제2호 : 사유발생 즉시 2. 제3항 제3호 :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 	<p>⑥ ----- ----- ----- ----- -----, <u>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u> <u>중</u> ----- ----- ----- ----- -----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항 ----- ----- 2. 제4항 ----- -----

현행	개정안
----	-----

⑥ 카드사는 회원에게 제공되는 포인트의 소멸시효가 도래하여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경우, 소멸예정 포인트, 소멸시기 등 포인트 소멸과 관련된 내용을 6개월 전부터 매월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합니다.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현행	개정안
<p>⑦ 회원이 무이자할부 결제 후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결제대금을 미리 카드사에 지급한 경우에도 카드사는 포인트를 적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무이자할부 기간이 경과된 일수만큼 포인트를 차감한 후에 회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p>	<p>⑧ (현행 제7항과 같음)</p>
<p><신 설></p>	<p><u>제24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 계약 철회)</u></p> <p>① 회원은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보다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실행일)로부터 14일(이하 "철회기한"이라 합니다)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으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계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p>

현행	개정안
	<p>② <u>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u></p> <p>③ <u>제1항에 따른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계약 철회는 회원이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 이자 및 카드사가 제3자에게 지급한 회원의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전액 반환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u></p> <p>④ <u>카드사는 회원에게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계약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 등을 청구하지 않습니다.</u></p> <p>⑤ <u>카드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계약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해당 카드사를 대상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대출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u> <u>2. 은행 등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하여 대출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u>
<u>제24조(중도상환)</u>	<u>제25조(중도상환)</u>

현행	개정안
<u>제25조(대출기간 연장)</u>	<u>제26조(대출기간 연장)</u>
<u>제26조(대금결제)</u>	<u>제27조(대금결제)</u>
<p>① 회원은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결제일에 자동이체결제방법 또는 <u>카드사가 정하는 방법</u>으로 결제하여야 하며, 대금결제일은 결제가능일 중에서 회원이 정하는 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p>	<p>① ----- ----- ----- -- <u>카드사가 정하는 방법(즉시결제, 송금납부(가상계좌 입금 등) 등)</u>----- ----- ----- ----- . <u>카드사는 대금결제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카드사의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상품설명서 등에 안내하여 드립니다.</u></p>
<p>④ 회원은 예금잔액 및 대출한도가 결제금액에 미달하여 제1항의 기일에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 (<u>제28조</u>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포함) 결제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u>한편놓기**</u>로 연체일수를 산정하여 다음 산식의 <u>지연배상금***</u>을 추가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결제일 다음날 대금을 결제한 경우는 연체일수를 1일로 합니다.</p>	<p>④ ----- ----- ----- ----- <u>제29조</u>----- ----- ----- ----- ----- -----</p>

현행	개정안
----	-----

* 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

** 연체이자를 산정할 경우 결제일 다음날과 완제일 중 하루만 포함

*** 지연배상금 = (연체금액-연체금액에 포함된 이자)×연체이자율×연체일수/365(윤년은 366)

-----.

제27조(자동이체결제)

제28조(자동이체결제)

①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이용대금을 제26조의 결제일에 자동이체계좌(단, 통장분실/도난 기타의 사유로 계좌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후의 계좌)에서 예금통장, 지급청구서 없이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① -----

- 제27조----- 자동이체결제계좌-----

-----.

현행	개정안
<p>④ 제1항 내지 <u>제3항</u>에 불구하고, <u>은행영업 마감시간(16시)</u> 이후에 입금된 금액은 결제계좌 개설기관의 사정에 따라 자동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p>④ ----- <u>제3항에도</u> ----- <u>결제계좌 개설기관의 영업 마감시간(16시)</u> -----</p> <p>-----</p> <p>-----</p> <p>----. <u>회원은 자동납부 업무 마감시간 이후 카드사의 홈페이지 등에서 즉시결제 또는 송금납부(가상계좌 입금 등)를 통해 당일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u></p>
<p>⑤ <u>제26조</u> 제1항의 카드이용대금 결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카드이용대금 결제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 영업일에 처리합니다.</p>	<p>⑤ <u>제27조</u> -----</p> <p>-----</p> <p>-----</p> <p>-----</p> <p>-----.</p>
<p><u>제28조</u>(기한이익의 상실)</p>	<p><u>제29조</u>(기한이익의 상실)</p>
<p><u>제29조</u>(회원의 책임)</p>	<p><u>제30조</u>(회원의 책임)</p>
<p><u>제30조</u>(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p>	<p><u>제31조</u>(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p>
<p><u>제31조</u>(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신청 및 성립)</p>	<p><u>제32조</u>(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신청 및 성립)</p>
<p><u>제32조</u>(적용 대상)</p>	<p><u>제33조</u>(적용 대상)</p>
<p><u>제33조</u>(약정기간)</p>	<p><u>제34조</u>(약정기간)</p>
<p><u>제34조</u>(결제금액)</p>	<p><u>제35조</u>(결제금액)</p>

현행	개정안
<u>제35조</u> (수수료율 등)	<u>제36조</u> (수수료율 등)
<u>제36조</u> (최소결제비율 변경)	<u>제37조</u> (최소결제비율 변경)
<u>제37조</u> (계약해지)	<u>제38조</u> (계약해지)
<p>① 회원이 <u>다음 각 호의 1</u>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 계약이 해지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원의 계약해지 요청 회원의 탈회 또는 갱신 탈락 등의 경우 <u>제28조</u>(기한이익의 상실)에 해당하는 경우 	<p>① ----- <u>다음 각 호에</u>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 2.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u>제29조</u>----- -----
<u>제38조</u> (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	<u>제39조</u> (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
<u>제39조</u> (카드의 분실·도난신고와 보상)	<u>제40조</u> (카드의 분실·도난신고와 보상)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제3항의 각 호를 제외하고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카드 거래에서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제41조에 따릅니다). 다만, 제1항의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카드 1매당 최고 ○만원의 보상처리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

제42조-----

현행	개정안
<p>③ 회원은 <u>다음 각 호의 1</u>에 해당하는 사유의 부정사용(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2.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카드의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3. 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에 의해 제2호와 같은 원인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4. 회원이 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5.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6.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유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행한 경우 	<p>③ ----- <u>다음 각 호에</u> -----</p> <p>-----</p> <p>-----</p> <p>-----</p> <p>-----</p> <p>-----</p> <p>-----</p> <p>1. ~ 6. (현행 제1호 내지 제6호와 같음)</p>
<p><u>제40조</u>(위·변조카드 사용 등에 대한 책임)</p>	<p><u>제41조</u>(위·변조카드 사용 등에 대한 책임)</p>
<p><u>제41조</u>(비밀번호 관련 책임)</p>	<p><u>제42조</u>(비밀번호 관련 책임)</p>

현행	개정안
<u>제42조</u> (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등)	<u>제43조</u> (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등)
<u>제43조</u> (변경사항의 통지)	<u>제44조</u> (변경사항의 통지)
<u>제44조</u> (위반할 경우 책임)	<u>제45조</u> (위반할 경우 책임)
<u>제45조</u> (변경승인 등)	<u>제46조</u> (변경승인 등)
<p>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변경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회원에게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여 드립니다.</p>	<p>① (현행 제1항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② 카드사는 <u>각 호의</u> 사항을 회원에게 변경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홈페이지 게시,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3개월 이전부터 매월 알려드립니다.</p> <p>1. 카드사가 할부수수료율,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수수료율,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율, 연체이자율 등 각종 요율 또는 연회비를 인상할 경우</p> <p>2. 카드사가 <u>최소결제비율</u>을 변경할 경우</p> <p>3. 카드사가 결제방법, 할부기간 및 횟수 등을 변경할 경우</p> <p>4. 신용공여기간을 변경할 경우</p>	<p>② ----- <u>다음 각 호의</u> -----</p> <p>-----</p> <p>-----</p> <p>-----</p> <p>-----</p> <p>-----</p> <p>-----</p> <p>-----</p> <p>-----</p> <p>1. (현행 제1호와 같음)</p> <p>2. ----- <u>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최소결제비율</u> -----</p> <p>3. ~ 4.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p>
<p>③ 제2항 제2호의 경우 카드사는 제2항의 방법 이외의 전화,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등으로 회원에게 안내가 가능합니다.</p>	<p>③ (현행 제3항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④ 제2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개별 통지 및 변경예정일까지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 광고 또는 카드사와 제휴사의 본.지점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합니다.</p>	<p>④ (현행 제4항과 같음)</p>
<p>⑤ 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우 회원이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회원이 변경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p>	<p>⑤ (현행 제5항과 같음)</p>
<p><u><신 설></u></p>	<p><u>⑥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 회원의 이용대금 명세서 수령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동 수령방법 변경과 관련된 제반의 사항도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u></p>
<p><u>제46조(경과 조치)</u></p>	<p><u>제47조(경과 조치)</u></p>

현행	개정안
<p>① 이 약관이 시행되기 이전에 약정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및 일부결제금액이 월약정(리볼빙) 회원에 대하여는 카드사별 내부 기준에 따라 기존 약정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p>	<p>① (현행 제1항과 같음)</p>
<p>②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에 따라 카드이용 정지 및 이용한도 감액에 대한 사전 통지는 2016년 1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p>	<p>② (현행 제2항과 같음)</p>
<p><신 설></p>	<p>③ <u>제15조제3항의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금지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신규 출시되는 상품에 적용합니다.</u></p>
<p>③ <u>제15조 제3항 제3호의 부가서비스 유효기간은 2016년 1월 31일부터 최초로 출시되는 부가서비스에 적용합니다.</u></p>	<p>④ <u>제15조제4항</u> ----- ----- ----- -----.</p>
<p>④ <u>제15조 제7항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u></p>	<p>⑤ <u>제15조제8항</u>----- -----.</p>
<p><신 설></p>	<p>⑥ <u>제46조제6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한 회원에게 적용합니다.</u></p>

현행	개정안
<u>제47조</u>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u>제48조</u>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u>제48조</u> (관할법원)	<u>제49조</u> (관할법원)